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격상 조치

1 | 개 요

○ (추진배경)

- 수도권(서울.인천.경기)을 1.5단계로 격상하되, 인천시가 감염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,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자체 방역조치 완화 및 적용 시점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1.5단계 격상

○ (목 표)

- 1.5단계 상향을 통해 추가적인 단계 상향 조정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, 수능에 대비한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

○ (핵심 메시지)

- 대화·식사를 동반하는 모임·약속 취소
-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
-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

○ (법적근거)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○ (적용기간) 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 24시까지

※ 2주간 시행,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
: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최소기간 동안 1.5단계를 시행하며 결과 분석

○ (적용지역)

- 1.5단계 격상 : 8개 구(중구, 동구, 미추홀구, 연수구, 남동구, 부평구, 계양구, 서구)
- 1.5단계 격상 제외 : 2개 군(강화군, 옹진군) ※ 개편 1단계 조치 유지

○ (인천시 일부 조정) 유흥시설, 종교시설

구 분	1.5단계 방역조치	
	서울 · 경기도	인천시 조정(8개 구)
유흥시설	- 시설면적 4㎡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- 춤추기 금지 - 좌석 간 이동금지	- 시설면적 8㎡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- 좌석 간 이동금지
종교시설	-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% 이내로 제한 - 모임식사 금지	-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%(좌석 한 칸 띄우기) 이내로 제한 - 모임식사 금지 ※ 종교시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- 강론 및 설교 시, 상당한 거리가 있고(3m 이상) 아크릴판을 설치한 경우(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)

※ **강화군, 옹진군**

- 개편 1단계 조치를 적용하되, 종교시설의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은 공통 적용

2

주요 조치내용

※ **핵심방역지침 의무화 조치**(참고 1~5)

○ (중점관리시설) 9종*

-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, 유흥시설에서 좌석 간 이동금지,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

* 유흥시설 5종(클럽.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식당.카페(일반음식점.휴게음식점.제과점, **50㎡ 이상**)

○ (일반관리시설) 14종*

- 이용인원 제한(4㎡당 1명 등), 좌석 띄우기 등 실시

*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PC방, 오락실.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학원(교습소 포함)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놀이공원.워터파크, 이.미용업, 상점.마트.백화점(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
○ (국공립시설)

- 소관부처·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철저 관리·운영
- 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의 경우, 이용인원을 20%로 제한
- 이 외 국공립시설은 50%로 제한

※ 월미바다열차(60%로 인원제한), 어린이과학관(85%로 인원제한) 기존 개편 1단계 유지

○ (사회복지이용시설)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

- 필요 시 일부 시설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
- ※ (인천형 운영기준 적용)

○ (마스크 착용 의무화)

- 1단계 의무화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

※ 중점·일반관리시설, 집회·시위장, 대중교통, 의료기관·약국, 요양시설, 주·야간보호시설, 고위험 사업장, 종교시설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, 실내·외 스포츠 경기장

※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·카페는 50㎡ 이상까지 마스크 의무화 대상 확대

○ (모임·행사)

- (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) 마스크 착용,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,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·협의*(기존 조치 유지)

* 시 공공행사 : 시 재난안전대책본부

* 구 공공행사 및 그 외 행사 : 관할 군·구

- (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콘서트, 학술행사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,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

※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(2020. 10. 13. ~ 별도 해제시) 현행유지

- (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, 시설면적 4㎡당 1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(주최측에서 선택)

- 그 외 모임·행사 및 식사 동반 자제 권고

○ (스포츠 관람)

-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,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%로 관중 입장

○ (종교활동)

-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의 50%(좌석 한칸 띄우기) 이내로 인원 참여,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·식사는 금지

※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

- 강론 및 설교 시, 상당한 거리가 있고(3m 이상)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(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)

○ (직장근무)

- (공공기관)

-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, 점심시간 시차운영,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

※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
- 직장 내 모임·회식 및 대면회의·출장 자제

- (민간기관) 공공기관과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

○ (고위험사업장) 콜센터·유통물류센터

-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

□ 일반.중점관리시설 / 종교시설 / 고위험사업장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안내 실시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- －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
 - ※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□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콘서트, 학술행사,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

-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안내 실시
- 해당 모임·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 - －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
 - －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요 약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조치사항

□ 적용기간 : 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 24시까지

○ 1.5단계 적용 제외 : 강화군, 옹진군

※ 2주간 시행,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 검토

○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

- (과태료 부과)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
- (구상권 청구)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

□ 조치사항

구 분 (1)		1단계 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 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	2단계	2.5단계	3단계
	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핵심지표	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(명)	(수도권) 100명 미만 (타권역) 30명 미만 (강원·제주는 10명 미만)	(수도권) 100명 이상 (타권역) 30명 이상 (강원·제주는 10명 이상)	※ 3가지 상황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.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역 300명 초과	전국 400명 ~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 한 환자 증가	전국 800명 ~ 1,000명 이상 또 는 더블링 등 급 격한 환자 증가
	주 평균 일일 60대 이상 확진자 수(명)	(수도권) 40명 미만 (타권역) 10명 미만 (강원·제주는 4명 미만)	(수도권) 40명 이상 (타권역) 10명 이상 (강원·제주는 4명 이상)	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 높음		
보조지표		(전체)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, 역학조사 역량, 감염재생산 지수($r>1$), 집단감염 발생 현황 (2.5~3단계)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, 방역망 내 관리 비율				
핵심 메시지		▲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 지하면서,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	▲ 지역유행 시작, 위험지역은 철 저한 생활방역	▲ 지역유행 본격 화, 위험지역은 불 필요한 외출과 모 임 자제,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시설 이용 자제	▲ 전국 유행 확 산, 가 급적 집 에 머무르며 다 중 이용 시설 이용 을 최대한 자제	▲ 전국적 대유행,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 람과 접촉 최소화

구 분 (2)		1단계 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 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	2단계	2.5단계	3단계
	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마 스 크 착 용	의무화	▲ 중점관리시설 ▲ 대중교통 ▲ 집회, 시위장 ▲ 의료기관·약국 ▲ 요양시설 ▲ 주야간보호시설 ▲ 종교시설 ▲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 ▲ 지자체에 신고·협업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 ▲ 실내스포츠 경기장 등	▲ 중점관리시설 ▲ 대중교통 ▲ 집회, 시위장 ▲ 의료기관·약국 ▲ 요양시설 ▲ 주야간보호시설 ▲ 종교시설 ▲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 ▲ 지자체에 신고·협업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 ▲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※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·카페는 50㎡ 이상까지 마스크 의무화 대상 확대	▲ 실내 전체 ▲ 위험도 높은 실외* 활동 * 집회, 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	▲ 실내 전체 ▲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	
	권 고	▲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	▲ 이외 밀집된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			
모임·행사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 - (행 사) 집회, 시위, 설명회(투자설명회, 재건축설명회 등)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페스티벌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시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- (사적 모임) 동창회, 동문회, 아유회, 동호회, 워크숍 -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		▲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신고·협의 필요 및 방역수칙 의무화 ◎ 신고협의 부서 ▶ 市 공공행사 : 市 재난안전대책본부(생활방역팀) ▶ 군·구 공공행사 : 군수·구청장 ※ 그 외 모임·행사 : 개최자의 군수 구청장에 신고 협의 ※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(2020.10.13.0시 ~ 별도 해제시까지) 현행 유지	▲ (500명 이상 행사) 신고협의 등 기존 조치 유지 ▲ (집회·시위 축제 대규모콘서트, 학술 행사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▲ (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의 4㎡당 1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(주최측 선택) ▲ 그 외 모임·행사 및 식사동반 자제 권고 ※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(2020.10.13.0시 ~ 별도 해제시까지) 현행 유지	▲ 100인 이상 금지	▲ 50인 이상 금지	▲ 10인 이상 금지
스포츠 행사		- 관중 입장(50%)	- 관중 입장(30%)	- 관중 입장(10%)	- 무관중 경기	- 경기 중단

구 분 (3)		1단계 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 2020. 11. 23.(월) 0시 ~ 12. 6.(일)	2단계	2.5단계	3단계
	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민간 시설	중점관리시설 (9종) ①~⑤유흥시설5종 * (클럽,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직접 판매홍보관 ⑨식당.카페 (일반음식점, 휴게 음식점, 제과점영업 시설허가, 신고면적 150㎡ 이상)	▲ 이용인원 제한 확대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※ 식당.카페 (일반음식점, 휴게음 식점, 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, 신고면적 150㎡ 이상)	▲ 이용인원 제한 강화 ▲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<인천시 조정> ▲ 유흥시설 5종* (시설면적당 8㎡당 1명 인원제한, 테이블 간 이동금지) ⇒ 8개 구만 적용 ※ 다만, 강화군, 옹진군은 유흥시설 (5종)에 대해 기존 1단계 현행유지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 ※ 식당.카페 (일반음식점, 휴게 음식점, 제과점영업, 시설허가, 신고면적 50 ㎡ 이상)	▲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▲ 이외 시설은 21 시 이후 운영 중 단 등 제한 강화 ▲ 위반 시 원스트 라이크아웃제	▶ (집합금지 3종) 1)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) 노래연습장 3) 실내 스탠딩공연장	
	일반관리시설 (14종)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(교습소 포함) ⑤직업훈련기관 ⑥ 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.워터파크 ⑩오락실.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 이.마용업 ⑬상점.마트.백화점 (한국표준산업 분류상종합소매업 300㎡ 이상) ⑭독서실.스터디카페	▲ 정상 운영하되,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1) 마스크 착용 2) 출입자 명단관리 3) 환기·소독	▲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(4㎡당 1명), 좌석 띄우기 등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	▲ 이용인원 제한 강화, 위험도 높 은 활동 금지	▲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▲ 위반 시 원스트 라이크아웃제	-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-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
	기타 시설 (중점.일반 23종 외 시설)	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 운영		- 마스크 착용 의무화	- 이용인원 제한 (4㎡당 1명 등)	

구 분 (3)	1단계 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개시	지역유행 급속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本格화	전국적 대유행
국공립시설	- 경륜·경정·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%로 제한 - 나머지 국공립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 (인원제한 없음) <인천시> 1) 정부방침 수용 ▶ 인천대공원·월미공원 /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인원제한 없음 2) 일부 조정 ▶ 월미바다열차 ⇒ 정원의 60%로 인원제한 운영 ▶ 어린이과학관 ⇒ 정원의 85%로 인원제한 운영	- 경륜·경마 등 20%로 인원제한 - 이외 국공립시설 50%로 인원제한 <인천시 조정> ▶ 기존 조치 유지 - 월미바다열차 ⇒ 정원의 60%로 인원제한 운영 - 어린이과학관 ⇒ 정원의 85%로 인원제한 운영	- 경륜·경마 등 중단 - 이외 시설 운영 (30%)	- 체육시설, 경륜·경마 등 운영중단 - 이외 시설 운영 (30%)	-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
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 포함)	<정부 방침>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*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, 시설별 위험도·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<인천시>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안전형 운영 기준 설정 * 단,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				- 휴관·휴원 권고 - 긴급돌봄 등 유지
교통시설	- 마스크 착용 의무화		-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	- KTX 고속버스 등 50% 이내 예약제한 권고	- KTX 고속버스 등 50% 이내 예약제한
종교활동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	- 정주예배·미사·법회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- 모임·식사 자제 권고 - 숙박 행사 금지	<인천시 조정> - 정주예배·미사·법회 등 좌석수의 50% 이내(좌석 수 띄우기)로 제한 - 모임·식사 금지 (정부방침) - 강론 및 설교 시, 상당한 거리가 있고 (3m 이상)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(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) : <u>마스크</u> <u>과태료 부과 예외</u> ※ 강화군, 옹진군이 1단계 현행유지에도 공통 적용	- 정주예배·미사·법회 등 좌석수의 20% 이내로 제한 - 모임·식사 금지	-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- 모임·식사 금지	- 1인 영상만 허용 - 모임·식사 금지
학교·유치원	- 밀집도 2/3 원칙, 조정 가능	밀집도 2/3 준수	밀집도 1/3 원칙고등학교 2/3, 초·중·고등학교 2/3 내에서 운영 가능	밀집도 1/3 준수	원격수업 전환
직장근무	▶ 공공기관 - 기관·부서별 재택근무 비율을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(예 : 전 인원의 1/5) ▶ 민간기업 -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/ 재택근무가 어렵고 밀폐된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)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	- 기관·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(예 : 전 인원의 1/3)	-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권고 -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-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·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,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		

□ 우리 市 행정조치 현황

○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

▶ (1차)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

- (적용기간) 2020. 8. 20. 15시 ~ 별도 해제 시
- (계도기간) 2020. 10. 12. / (시행) 2020. 10. 13. / (과태료) 10만원 이하

▶ (2차)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

- (적용기간) 2020. 10. 14. 0시 ~ 별도 해제 시
- (계도기간) 2020. 11. 12. 24시 / (과태료 시행) 2020. 11. 13. 0시 ※ 질병관리청에서 1개월 계도기간
-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/ 관리·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

▶ (3차)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

- (과태료 처분 시행기간) 2020. 11. 13. 0시 ~ 별도 해제 시
-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/ 관리·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

○ 인천시 전역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※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

▶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

- (적용기간) 2020. 8. 24. 0시 ~ 10. 11. 24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

▶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

- (적용기간) 2020. 10. 13. 0시 ~ 별도 해제 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

○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

- (적용기간) 2020. 8. 26. 0시 ~ 별도 해제 시
- (계도기간) 2020. 10. 11. / (시행) 2020. 10. 12.
- (과태료) 운송사업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

○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(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행정조치 [조치 해제] 2020. 9. 14. 0시

- (과태료) 2020. 9. 3. 0시 ~ 9. 13. 24시 /

□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현황

구 분	조 정(2020. 11. 7. ~)
전자출입명부 의무화	▶ 중점관리시설(9종) - 유흥·단란·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홍보관, 식당·카페(150㎡이상) ※ 다만 신규 포함된 식당·카페(150㎡이상)은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(~ 12. 6.까지)
출입명부 의무화 (전자 또는 수기명부 선택)	▶ 일반관리시설(13종) -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 등, 실내체육시설, 아·미용업, 독서실·스터디카페 ※ 일반관리시설 중 상점·마트·백화점(종합소매업 300㎡ 이상) 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

참고 1

1.5단계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헌팅포차, 감성주점	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	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유흥주점 (클럽, 룸살롱 등), 콜라텍	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	▶ 인천시 조정 : 춤추기 금지(댄스 플로어 등 사용금지)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
단란주점	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▶ 인천시 조정 : (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간제 운영(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) (지자체별로 적용 여부 선택 가능) 춤추기 금지(댄스 플로어 등 운영 금지),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	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1시 이후 운영 중단	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노래연습장	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	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증상 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
증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	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,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(대장작성)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	
실내 스탠딩 공연장	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	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)	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	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
증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휴게음식점· 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·신고 면적 50㎡ 이상)	*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(~12.6),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 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<취폐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>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	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<취폐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>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

참고 2

1.5단계 일반음식점 · 휴게음식점 · 제과점영업 관련 FAQ

Q1.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,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
- 여기에서 '테이블'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,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

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	
좌석 한 칸 띄워 앉기	
테이블 간 띄워 앉기	
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(빨간색 실선 - 가림막)	

Q2.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/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?

- 칸막이·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,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
- 또한,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·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

Q3.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, 일부 공간은 좌석/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?

-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
- 예를 들어, 룸(room)과 홀(hall)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,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

Q4. 식당·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?

-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 이상)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
- 다만, 전자출입명부를 미설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제도기간 후 12월 7일부터 실시함

참고 3

1.5단계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□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오락실·멀티방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실내체육시설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영화관·공연장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*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PC방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학원(독서실 제외, 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이·미용업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독서실·스터디카페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워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▶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놀이공원·워터파크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수용가능인원의 50%로 인원 제한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□ 상점·마트·백화점 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▶ 마스크 착용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참고 4

1.5단계 집합·모임·행사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< 전시회, 박람회, 국제 회의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▶ 감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▶ 시설 허가·신고 면적 4㎡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<u>또는</u>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< 집회·시위, 축제, 대규모 콘서트, 학술 행사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▶ 감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▶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

※ **대규모콘서트** : 관중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

참고 5

1.5단계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※ 종교시설의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은 **강화군, 웅진군도 공통 적용**

⇒ 강론 및 설교 시, 상당한 거리가 있고(3m 이상)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(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)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정규 예배 · 미사 · 법회 · 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 ▶ 인천시 조정 : 좌석 수의 50% 이내(좌석 한 칸 띄우기) 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(숙박행사 금지)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종교행사 전·후 시설 소독 및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	정규 예배 · 미사 · 법회 · 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 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(숙박행사 금지)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부과시행(추가조치 포함) 참조